

2001. 10. 20(土)

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總務社會委員會

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정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지선대)

가. 제안이유

-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키 위한 개정사항임.

나. 주요내용

- 신설
 - 조례 제9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“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%를 경감한다”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○ 법규적 검토

-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으며
 - 동법 제9조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·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”라고 되어 있으므로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“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” 등록된 문화재 등은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이 됨으로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행정자치부에서 세제 13400-186(2001. 7. 26)호로 “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” 이 시달되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바, 그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됨.
- 아울러 동 조례는 2001. 8. 31일부터 2001. 9.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, 2001. 10. 6일 제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겠음.

○ 행정적 검토

-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“등록문화재” 는 동법상의 “지정문화재” 보다는 격이 낮은 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문화재로써 “공익성” 이 지정문화재와 같이 요구됨으로 지방세법상 불균일 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으며
- 특히,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따를 경우에 예상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간접적 지원인 감면조항을 적용하는것 또한 지정문화재와도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없 음”

5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. 끝.